



일터에서의 유해 · 위험 예방 조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칙	제592조 정의 제593조 적용범위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1조 예방 조치 제602조 노출 후 관리
일반적 관리기준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96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 노출 위험 작업 시 조치기준	제601조 예방 조치 제602조 노출 후 관리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제599조 세척시설 등 제60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603조 예방 조치 제604조 노출 후 관리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 · 위험 예방 조치

정의

혈액매개 감염병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결핵 · 수두 · 홍역 등 공기,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혈액노출

눈, 구강,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적용범위

-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 혈액의 검사 작업
-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감염병 예방 조치 등

-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유해성 등의 주지

-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 전파 및 감염 경로
-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혈액노출 예방 조치

-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조치 실시

-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 금지
-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료기구, 솜 등 혈액오염물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 금지
-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
-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세척

-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조치 실시

-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 주사침 사용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



- 근로자는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 금지

☑ 혈액노출 조사 등

-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
 - 노출자 인적사항, 노출 현황,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노출자 처치 내용, 노출자 검사 결과
-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
 - **별표 14(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2.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 **별표 15(혈액노출 후 추적관리)**
- 사고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
- 사고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금지

☑ 세척시설 등 /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 혈액매개 감염 우려 작업 시 세면·목욕 등 세척시설을 설치
-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 시 다음에 따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
 -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보호앞치마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 공기매개 감염 예방 조치

-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한 다음 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 제한
 -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 시술 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조치
 -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 제한
-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 실시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 노출 후 관리

-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조치
-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조치
-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 제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예방 조치

● 고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 착용,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등 제한,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 제공,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실시

● 노출 후 관리

- 고위험작업 수행 근로자가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고열 · 오한 · 두통 - 피부발진 · 피부궤양 · 부스럼 및 딱지 등 - 출혈성 병변



긴 소매/긴 바지 작업복 착용



작업 후 반드시 목욕 실시



이상 증상 시 의사 진료

Check Box | 주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의 종류 및 특성

쯔쯔가무시증이란?

- 8월 하순부터 11월에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임
- 쯔쯔가무시균이 풀숲,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

산림,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
농업, 임업 근로자 등
조경 및 제조작업자 등

쯔쯔가무시 균(O.tsutsugamushi)



털진드기 유충



풀숲 속 들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시기 (4~11월, 집중발생시기 5~8월)에 야산,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

주요 증상

발열,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흡혈여부에 따른 형태(암컷)



비흡혈 상태



흡혈상태

쯔쯔가무시증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증상은?

쯔쯔가무시증

- 피부발진
- 진드기로부터 물린 상처(검은 딱지)
- 38℃ 이상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
- 심한 두통이나 기침, 근육통이 지속
- 폐렴, 심근염, 뇌수막염 등 합병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 원인불명의 발열(38℃ 이상)
- 소화기 증상(구토, 설사, 복통)
-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 림프절 종창, 호흡기 증상(기침)
- 출혈증상(지반출혈, 허혈 등)

「일터에서의 유해·위험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